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24-0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간접영향권)의 주민지원사업 종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구분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공동사업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분야	영농·영어(營漁)시설 기자재 구입(농기계, 비료, 농약 등 소모품 포함) 등
		상공업분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투자 등
		그 밖의 분야	마을 공동 부동산 구입(단순 토지매입 등 제외), 일자리창출 및 교육(청·장·노년층) 사업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분야	건강검진, 공공의료지원 순환버스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	경로당 지원, 노인요양시설 및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등
		교육·문화분야	마을 공동 휴양시설 회원권(콘도, 리조트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지원 등
		환경·위생분야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운영 등
		운동·오락분야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기자재 구입 등
		전기·통신분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
		그 밖의 분야	CCTV 설치, 마을 공용 차량 운영, 마을회관 설치·운영 등

구분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공동사업	3. 육영사업	초·중·고등학교(영유아 보육시설 포함) 시설물 설치 및 집기·비품 구입, 지역 장학사업 등	
	4. 그 밖의 사업	국내외 환경시설 견학(단순 관광 제외), 공동주택 공동관리비, 주변지역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회적기업 설립·운영, 특별재난·재해(예방포함) 물품 지원, 지역봉사활동 지원 등	
가구별 사업	-	전력사용료·상하수도사용료·냉난방비·정보통신비 지원, 쓰레기봉투·농수축산물·중소기업제품·녹색제품 구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